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인배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.10.31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 ~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“2,092,000원”을 “**2,154,000원**”으로 조정(안 제3조 제1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“2,092,000원”을 “2,154,000원”으로 조정하였음.(안 제3조 제1항)

○ 검토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. 10. 31 「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~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도 월정수당에 ‘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%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서
-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,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,092,000원에서 2,154,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>

○ 심의일시 : 2014. 10. 31(금)

○ 의결내용

- 4년간(2015~2018)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
- 2016~2018년도 :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
- 한도액 : 3,959만원(년)